

2024년 도 문화재 위원회

제2차 순재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4. 3. 26.(화) 14: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검토사항】

2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재검토)

3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4

「곡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5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6

「민영익 명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7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 설계(안) 검토

【보고사항】

8

2024년 근대 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9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보고

심 의 사 항

1.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각 문화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

연번	명칭	도면변화 여부
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X
2	서울 대한의원	O
3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X
4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X
5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X
6	한구단	O
7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O
8	서울 한국은행 본관	O
9	서울 정동교회	O
10	대구 계산동성당	O
11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O
12	구 도립대구병원	O

(3) 조정 취지

- ① 2016년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 중 현재까지 미반영 된 ‘원지형보존’ 문구를 삭제*

* 기존) 신축금지, 심의구역, 원지형보존 등 → 변경) “개별심의”

- ②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그 내용을 반영

(4) 세부내용

- ‘개별검토(원지형보존)’에서 ‘개별검토’로 변경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라. 문화재별 조정(안)

(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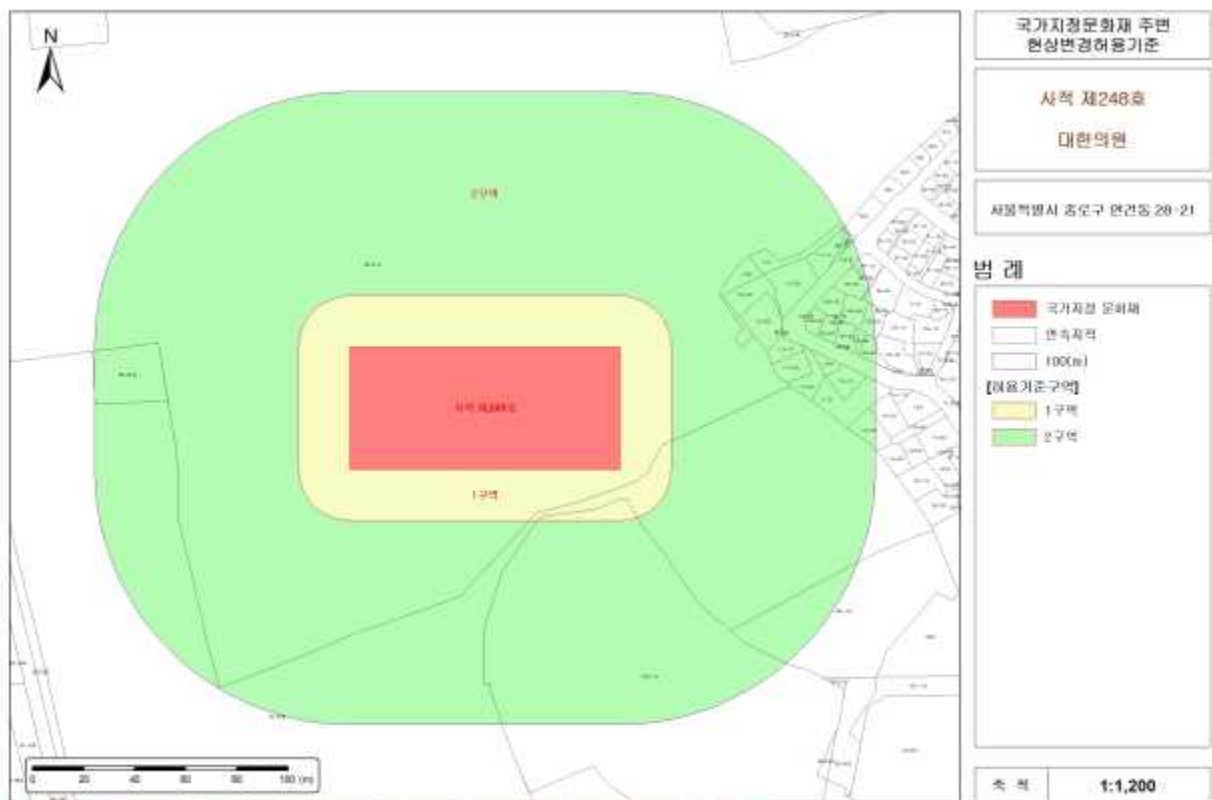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서울 대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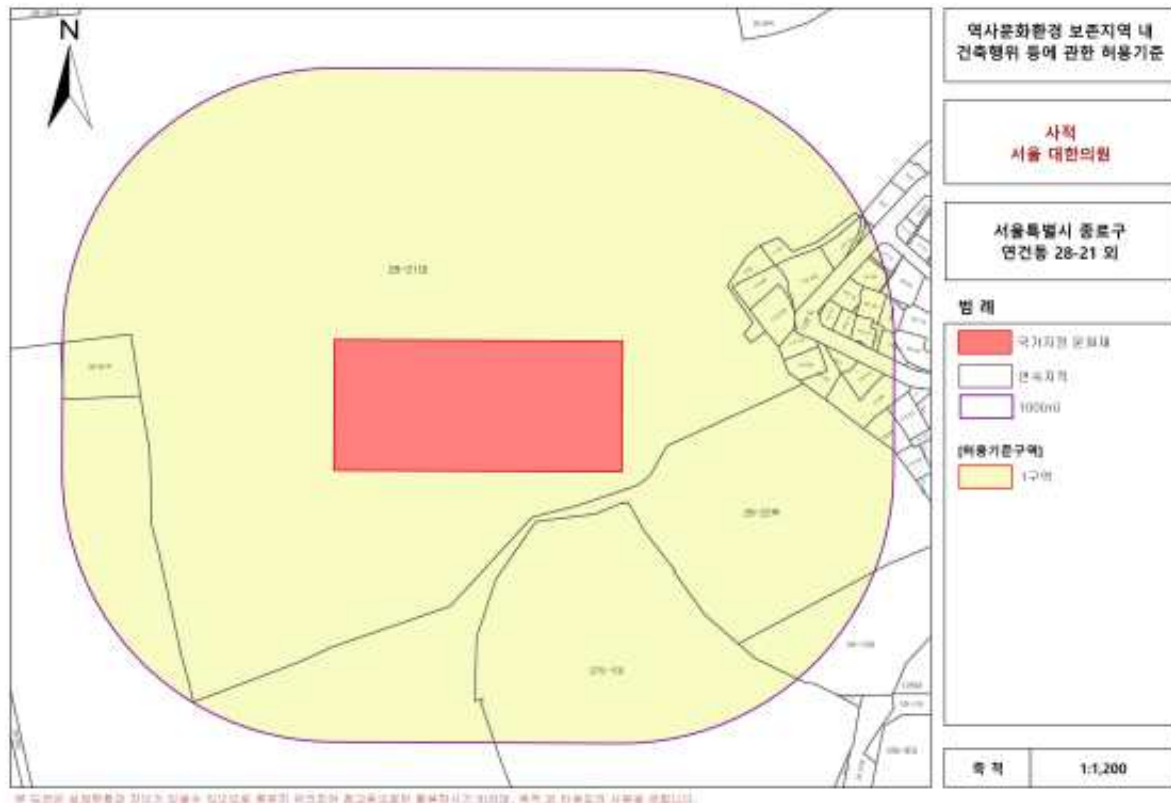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3)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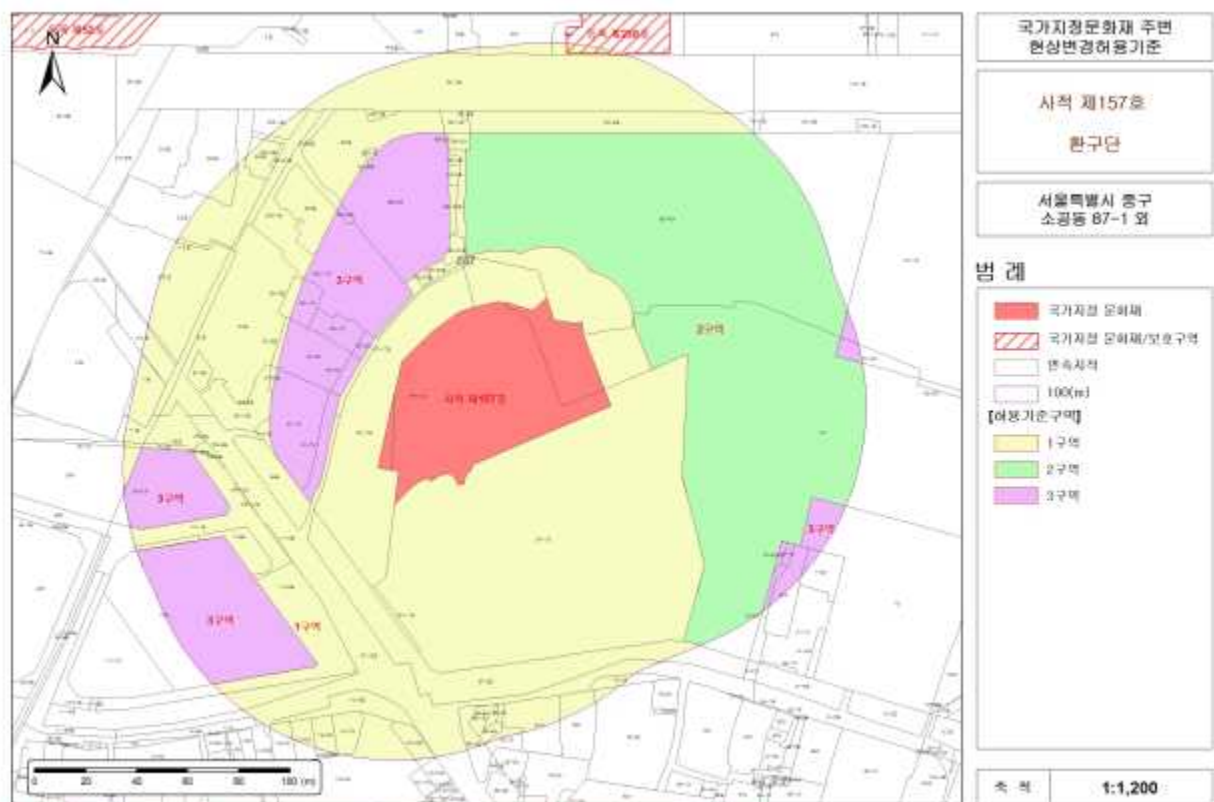
-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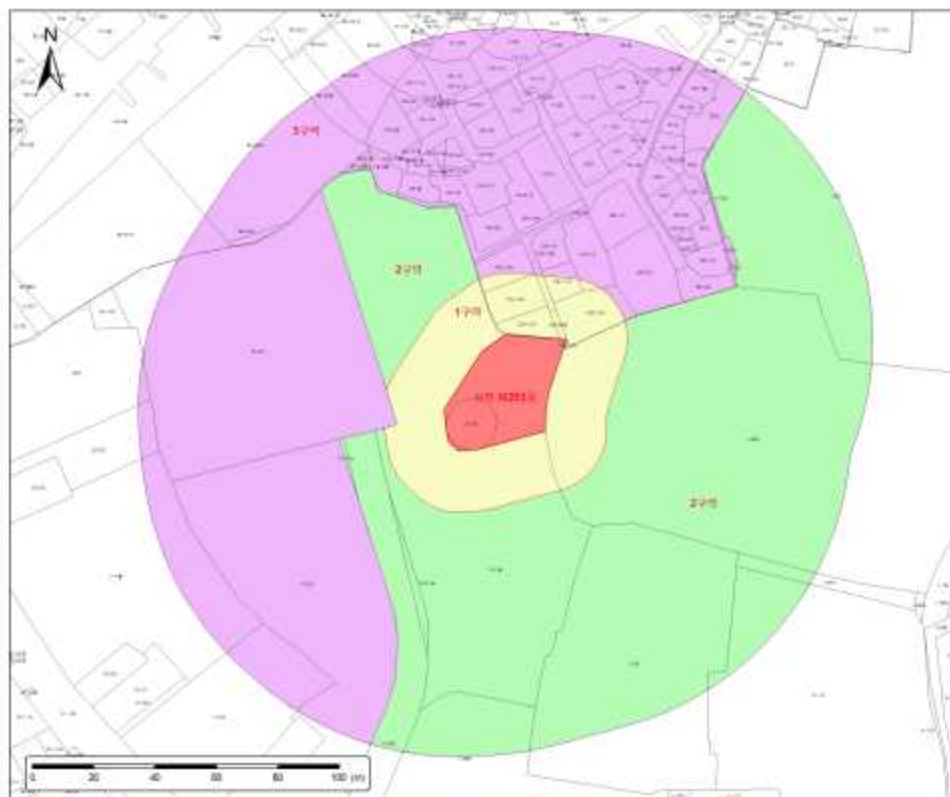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환구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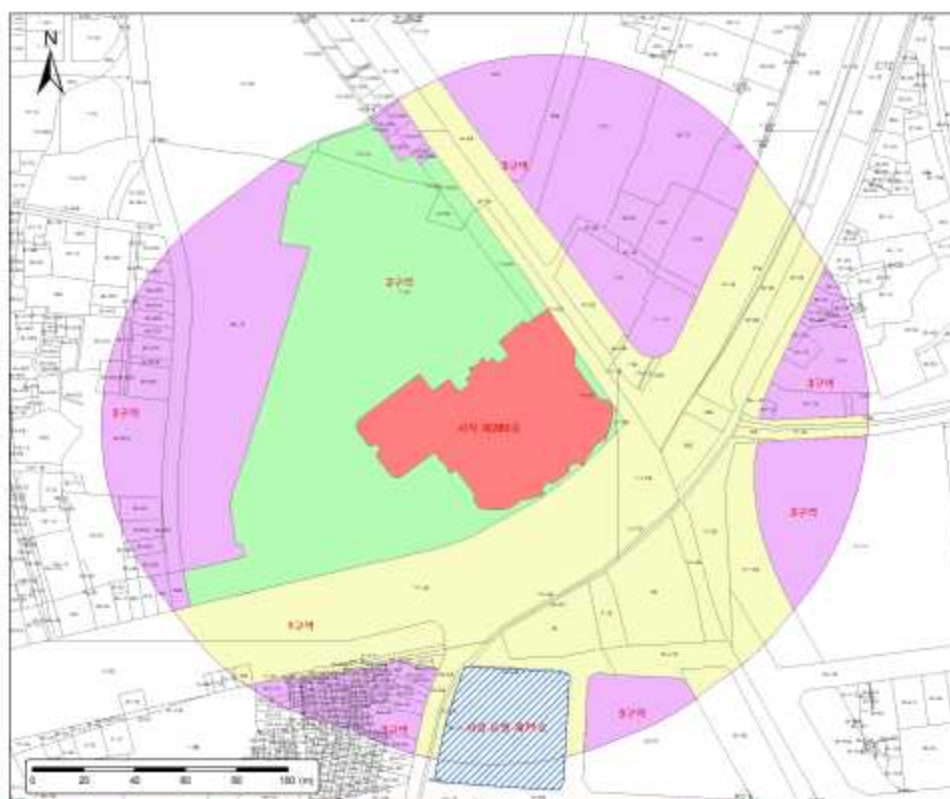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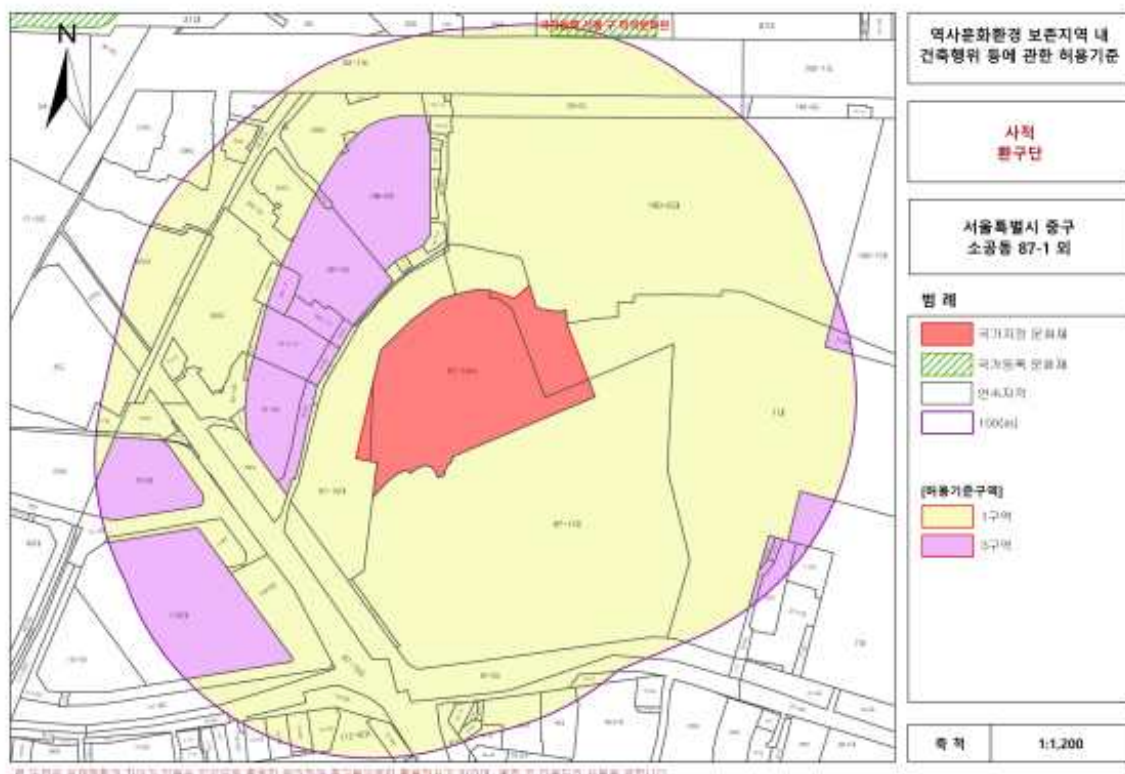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리 용역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책 및 타공도와의 차이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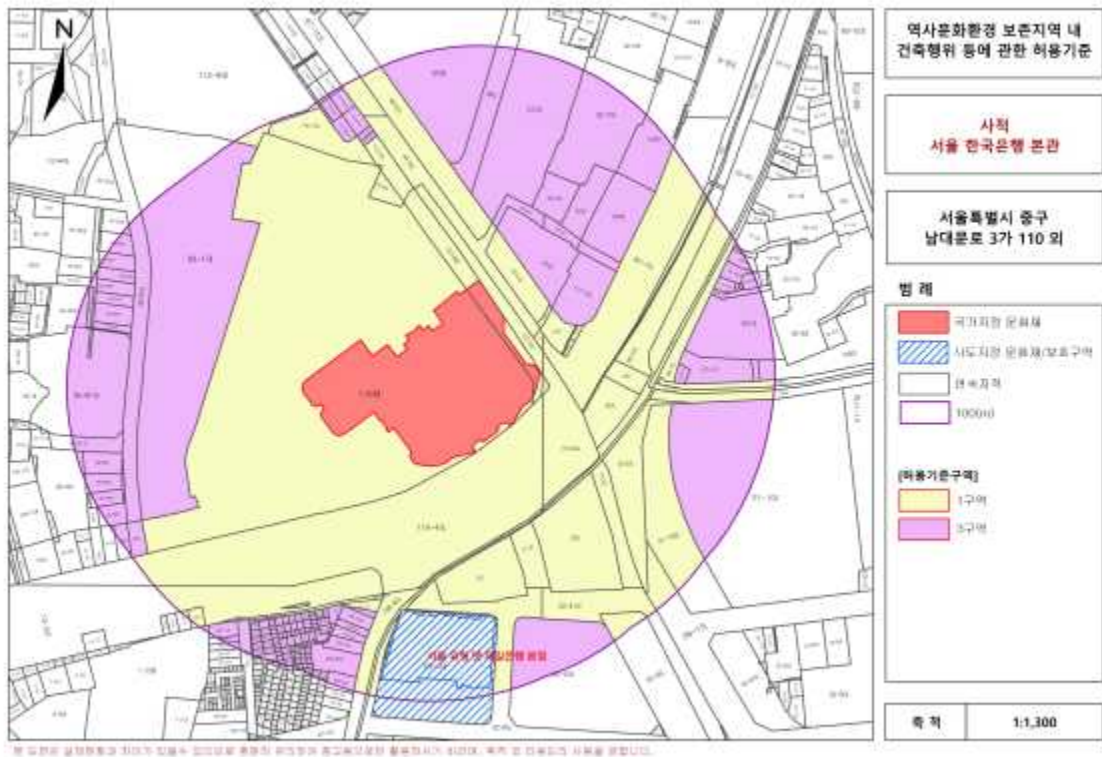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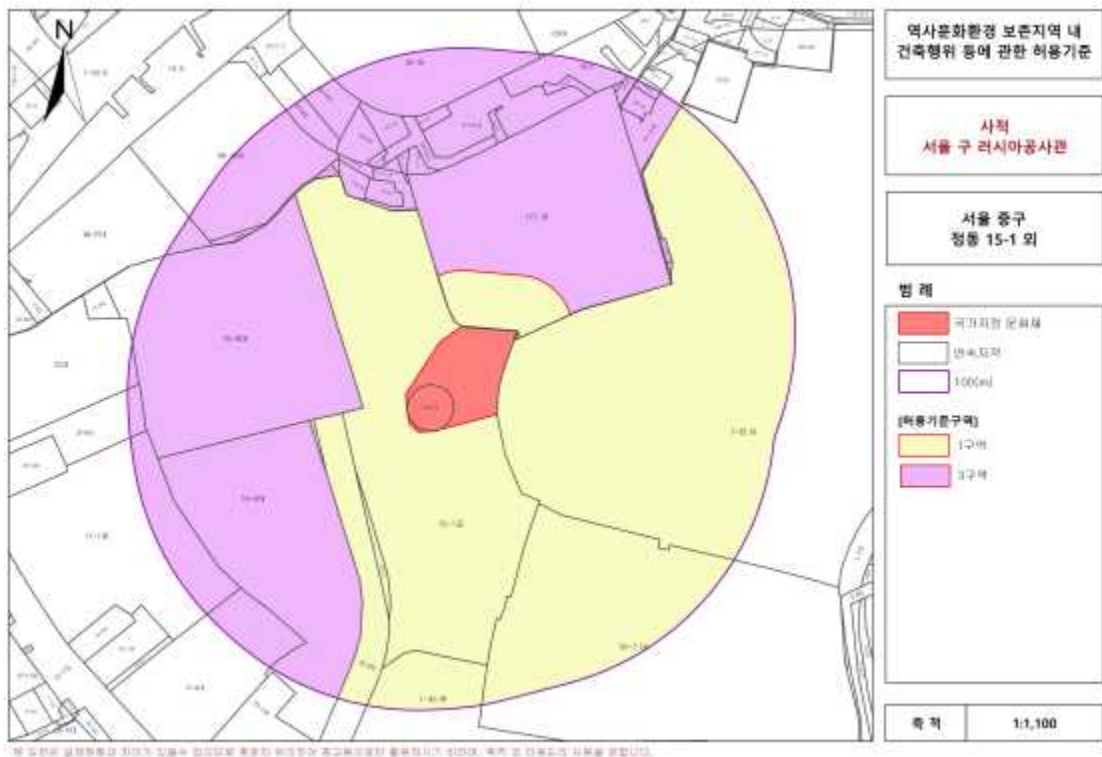


본 도면은 실제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중분리 용역하여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국책 및 타공도와의 차이를 금합니다.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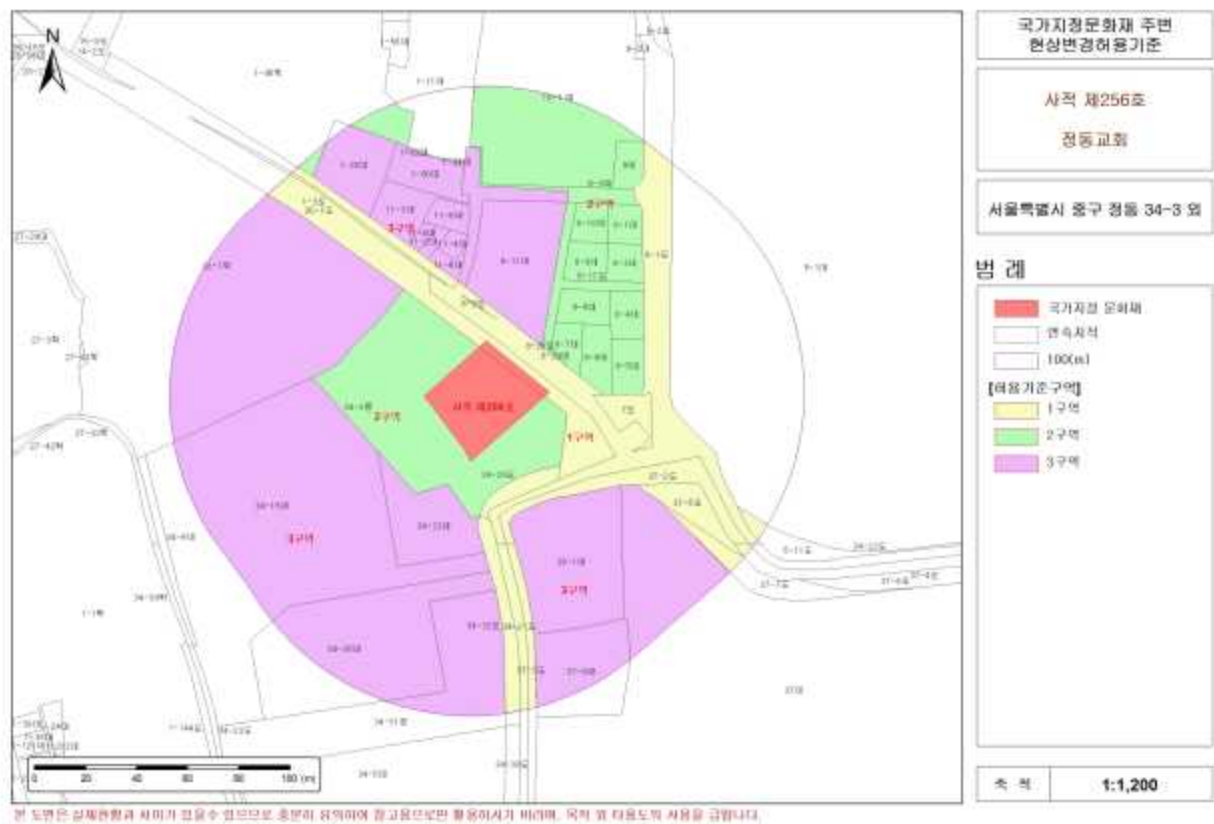




(5) 서울 정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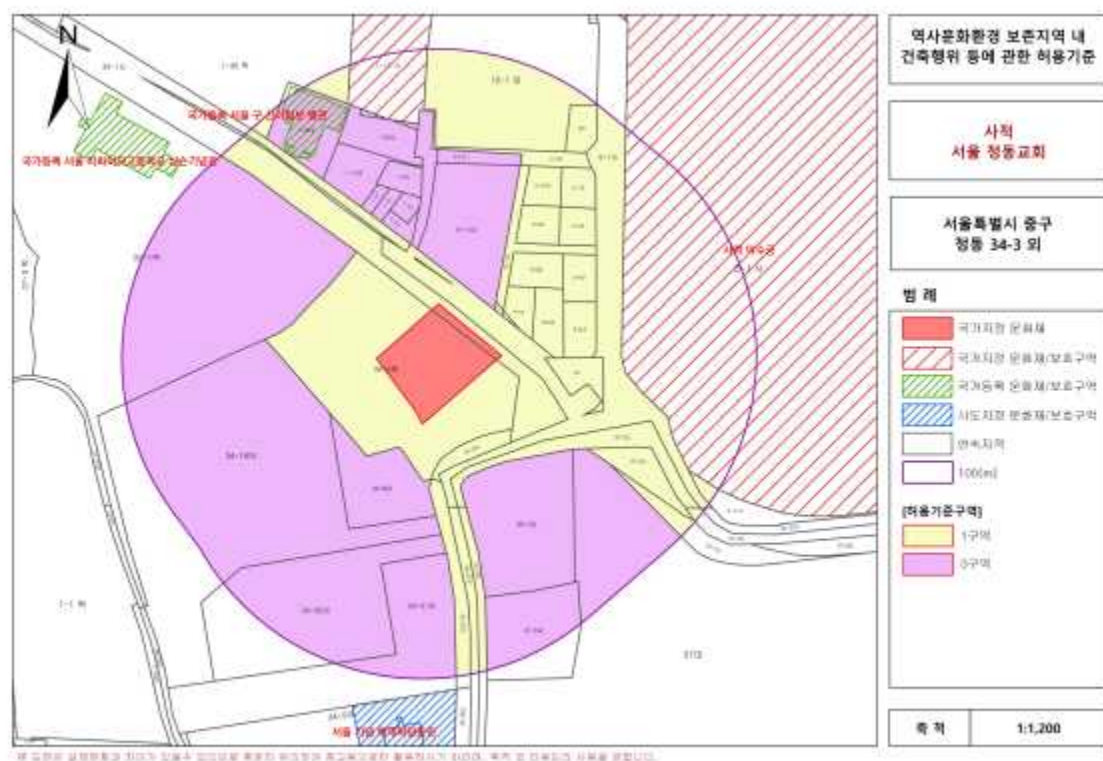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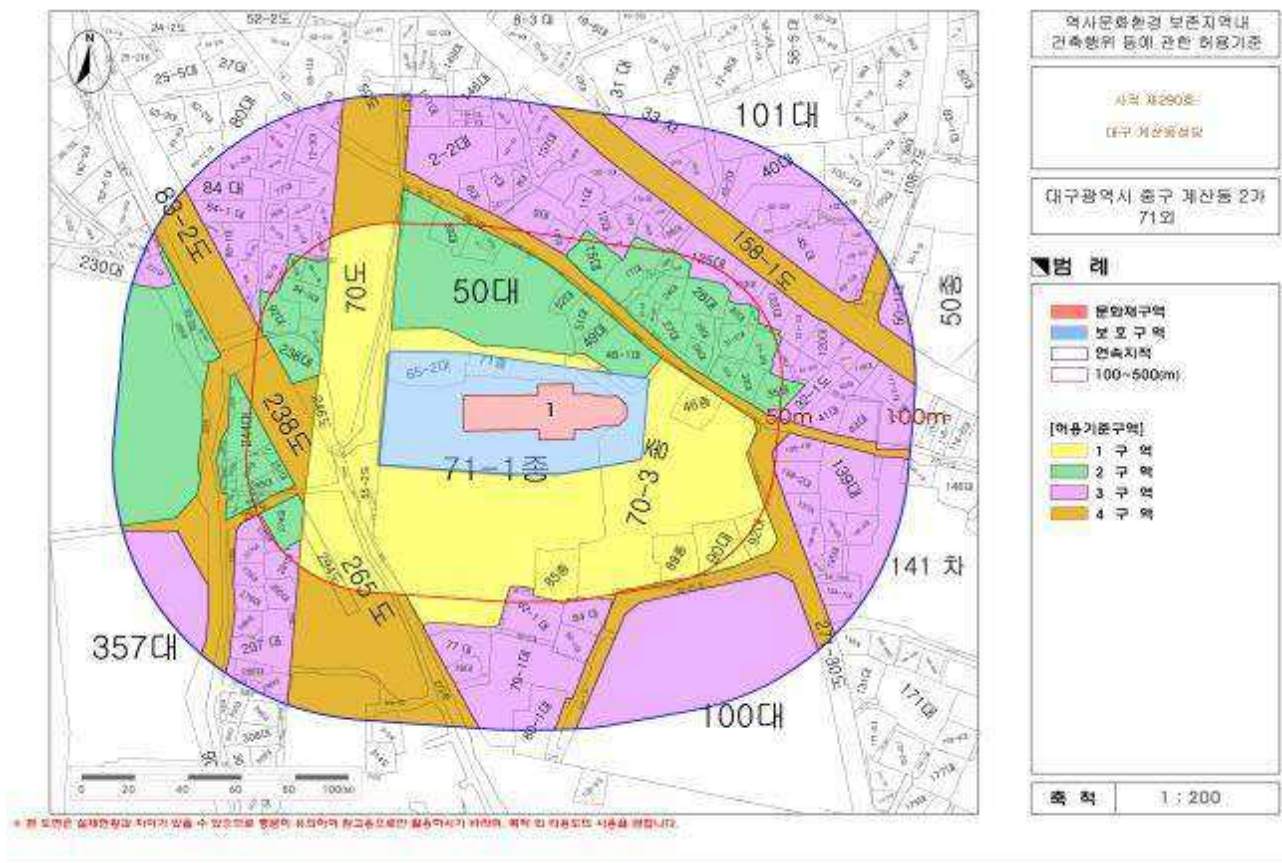


(6) 대구 계산동성당

※ 2023년 제11차 근대분과 위원회 **부결**(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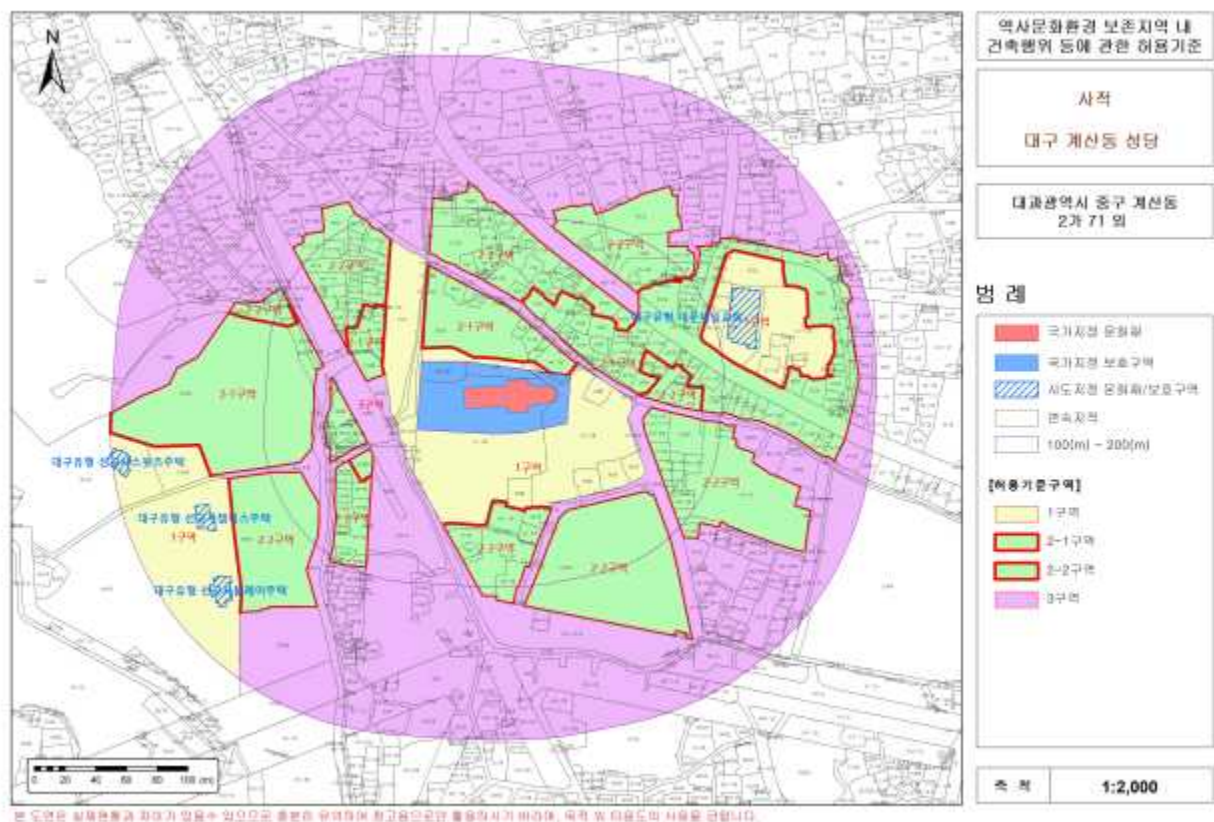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 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 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2 최고높이 26m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제3구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이전의 행정행위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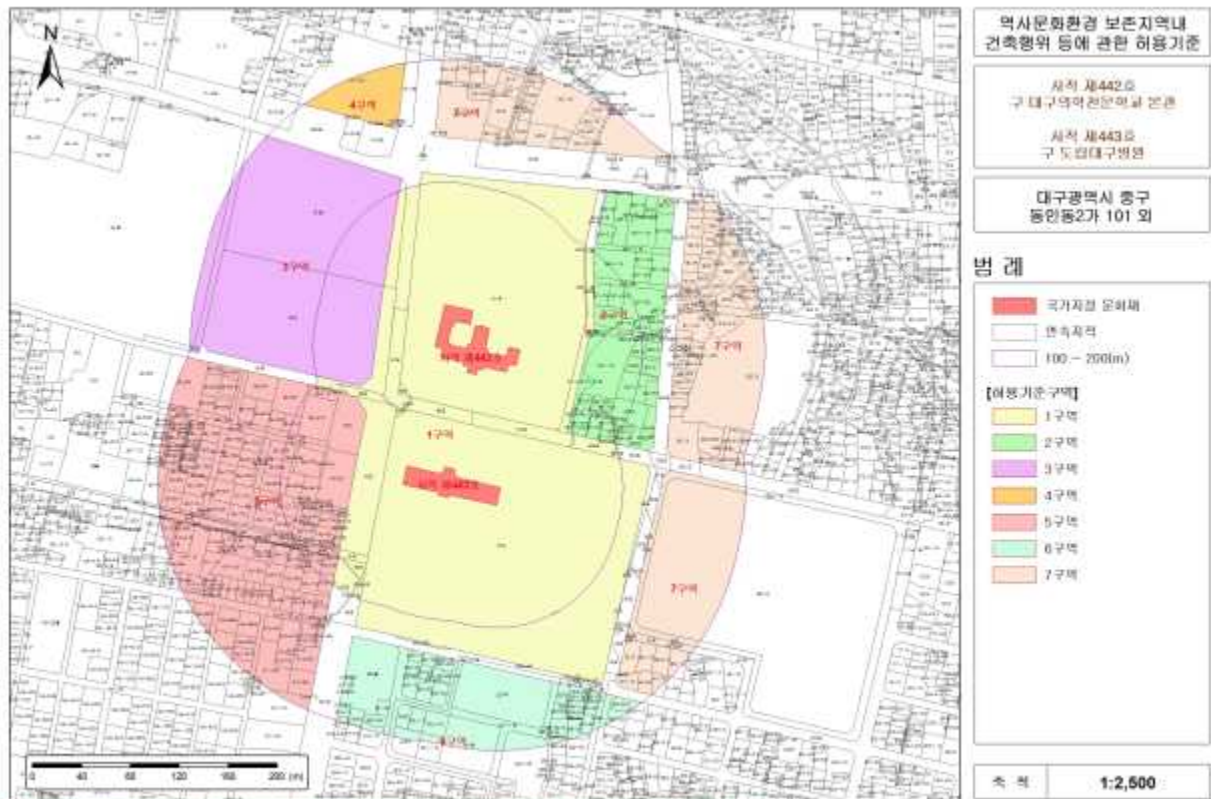


(7)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 2023년 제11차 근대분과 위원회 **조건부 가결**(1, 2구역의 허용용도 조항을 삭제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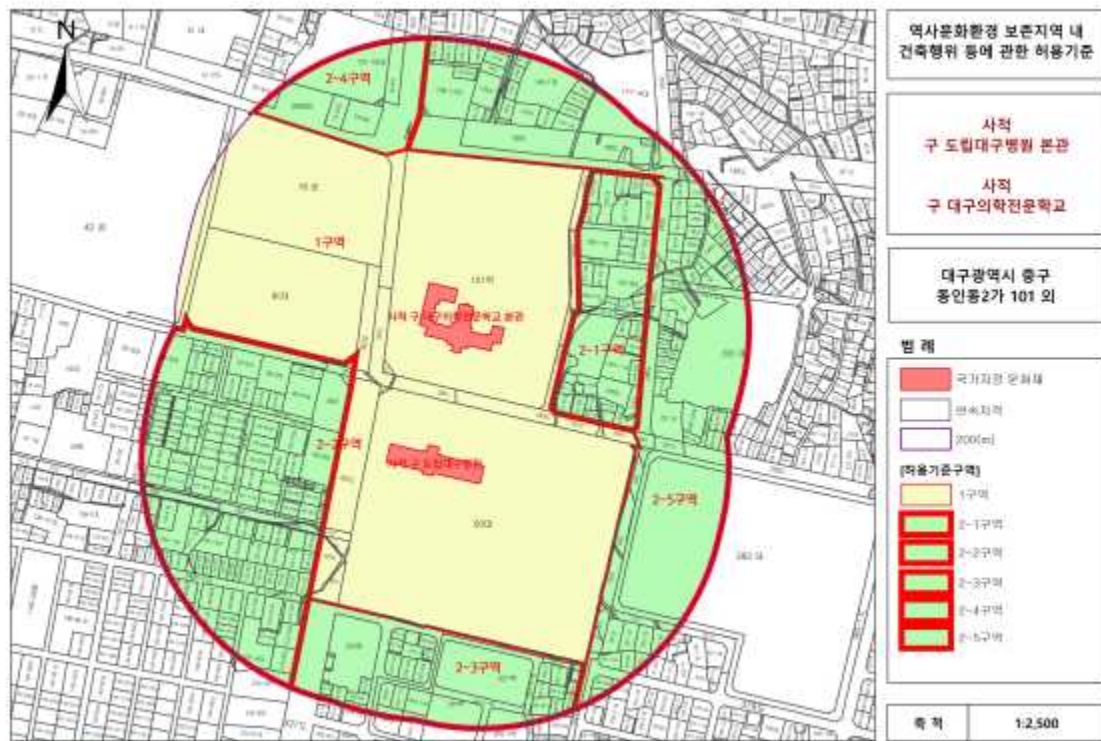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제2구역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제3구역	○ 최고높이 2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37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제6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제7구역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2-1	○ 최고높이 25m 이하
	2-2	○ 최고높이 37m 이하
	2-3	○ 최고높이 40m 이하
	2-4	○ 최고높이 50m 이하
	2-5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검 토 사 항

2.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재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22.1.5.)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건은 20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23.9.26.)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보완자료 제출(’24.2.13.)에 따라 이를 재부의함
 - 보류사유: 사적 지정을 위한 가치판단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보완내용: 측후소 주변 공간의 현황 및 가치, 사적 지정 후 활용 계획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부산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 구 부산측후소 * 現 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01.10.25. 지정)
 -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북병산길32번길 5-11(지번: 대청동1가 9-305)
 - 소유자: 기상청
 - 건립시기: 1933년
 - 수량/구조: 1동(지상4층, 연면적 644.87㎡), 철근콘크리트구조
- (3)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건물 1동(지상 4층, 건물면적 295.87㎡, 연면적 644.87㎡)
 - 문화재보호구역: 9,145.1㎡, 임야 2필지(중구 대청동1가 9-305, 9-435)

3.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22.2.14.~22.8.8.)을 통해 후보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시·도문화재위원회('23.6.8.) 및 현지조사('23.8.28.~8.29.)를 거쳐 공간 범위 적정성 및 공간 내 개별 등록신청문화재의 등록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공모사업 추진경과】

- 사업 공모('22.2.14. ~ 4.15. / 총 5개 광역, 9개 기초 선정)
 - 대전(동구), 경기(파주), 충북(옥천), 전북(김제·전주·정읍), 전남(보성·순천·여수)
- 서면평가('22.5.3.): 4개 지역 선정(경기 파주, 충북 옥천, 전남 순천·여수)
- 현장조사('22.6.13.~6.23.): 신청사업 확인 및 검토
- 종합평가('22.8.2./여수 거문도 1개 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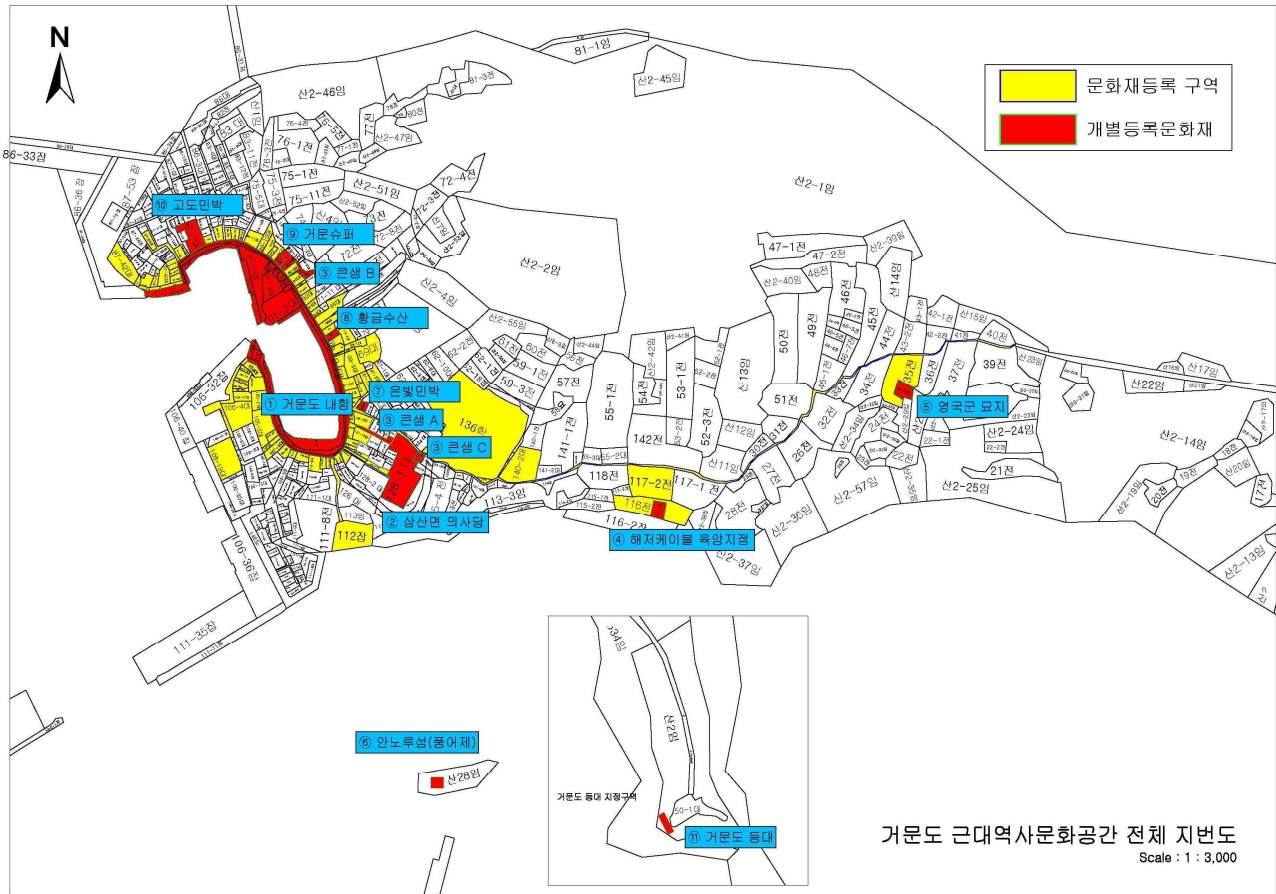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여수시장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35외 118필지(총 119필지)
- 소유자 : 여수시 외 다수
- 면적 : 29,358.6㎡ / 119필지
- ※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 등록신청범위 현황도



○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목록 : 총 11개

번호	신청대상	건립 년도	용도	규모·수량	소재지	소유자 (동의여부)
1	여수 거문도 삼산면 의사당	1959	공공시설 (창고, 회의실)	지상2층 1동 87.15㎡	삼산면 거문리 128-1	여수시 (○)
2	여수 거문도 큰샘	1895 이후	생활시설	8.67㎡, 3동 (A)3.36㎡ (B)3.36㎡ (C)1.95㎡	삼산면 거문리 (A)131-6 (B)89-3 (C)123·124	(A)국토부수입관리관 여수시(B)○○○... (C)기계부 (○)
3	여수 거문도 해저케이블 육양지점	1885	통신시설	195㎡, 1기	삼산면 거문리 116-1	기획재정부 (○)
4	여수 거문도 영국군 묘지	1910	묘지	115.5㎡, 3기	삼산면 거문리 산 2-28	여수시 (○)
5	여수 거문도 안노루섬(풍어제)	-	종교시설	30㎡, 1기	삼산면 거문리 산 28	○○○ (○)
6	여수 거문도 은빛민박	1966	주거시설 (상가, 주택)	지상2층 1동 67.1㎡	삼산면 거문리 65	○○○ (○)

번호	신청대상	건립 년도	용도	규모·수량	소재지	소유자 (동의여부)
7	여수 거문도 황금수산	1955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지상2층 1동 63.22㎡	삼산면 거문리 98	○○○ (○)
8	여수 거문도 거문슈퍼	일제 강점기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지상3층 1동 99㎡	삼산면 거문리 89-5	○○○ (○)
9	여수 거문도 고도민박	1925	숙박시설	지상2층 1동 282.46㎡	삼산면 거문리 87-7	○○○ (○)
10	거문도 내항	거문도 사건 이후	호안시설	6,197㎡	삼산면 거문리 87-47 외 17필지	○○○...
11	여수거문도 등대	1905	공공시설 (등대)	13㎡ 1동	삼산면 덕촌리 산2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3.6.8.) :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 ('23.7.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 문화재청)
- ('23.8.28.~8.2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9.1.)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여수시, 등록 구역 변천과정 및 고증자료 등)
- ('23.11.7.) : 보완자료 제출(여수시 → 문화재청)

4. 『곡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곡성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10.1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4.1.2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곡성군청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곡성성당
 - 소재지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1길 20
 - 소유자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58년
 - 구조 및 규모 : 원셋구조, 조적조 / 1동, 면적 283.6㎡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10.1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청 → 문화재청)
 - ('24.1.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5.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4.5.)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2.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려대학교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 명함 (충정공 유서)	1건 2점	명함 가로 6 세로 9.2 봉투 가로 8 세로 10.5	1905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4) 추진경과

- ('22.10.3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2.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6. 「민영익 명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민영익 명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영익 명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5.16.)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2.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익 명함	1점	가로 5.5 세로 8.8	1883년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22.10.3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2.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7.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 설계(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의 보수정비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배면 증축창고 부분을 철거하고자 하는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20.6.24. 등록)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토평동)
 - 주요 이력 및 현황
 - 1940년대 건립, 1980년대 보수
 -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300㎡)
 - 2021년 정기조사(C등급)
 - 2022년 종합정비계획(국고보조) 수립: 증축부 철거의견 포함(마 참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설계, 국비 6천만 원)
- (3) 검토사항 : 배면 증축창고 부분 철거(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 고 사 항

8.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 보고사항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하는 사항임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함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2) 사업기간 : 2024년 1월 ~ 사업종료 시까지

(3) 사업대상

-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22	2,552,030	1,786,421	765,609
국가 등록	시설물	174	12,828,306	6,414,153	6,414,153
	동 산	15	963,710	481,855	481,855
	근대역사문화공간	12	3,560,000	1,780,000	1,780,000
	소 계	201	17,352,016	8,676,008	8,676,008
합 계		223	19,904,046	10,462,429	9,441,617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9	4,414,000	2,207,000	2,207,000

- 문화재 재난안전(전기, 소방, 방범, 방재 IoT) 구축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6	204,000	138,400	65,600
국가등록	18	1,061,300	530,650	530,650
합 계	24	1,265,300	669,050	596,250

(4)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주요사업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근대문화재과) 설계검토·승인
 - 단순 보수 등 기타 사업 : 지자체 설계 검토
- 지자체 : 설계도서 작성, 지방검토사업 설계 검토·승인, 사업시행, 사업 감독 등
 - ※ 중요 사안은 단위 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별도 검토 후 사업 시행

(5) 행정사항

- 2024년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9.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전차 381호」의 보존처리 등 현상변경 허가 신청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전차 381호	서울시 종로구	서울역사 박물관장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서울역사박물관장 (2) 허가내용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 내용: 차체 외부 동·서·남측 변색 등에 따른 재도장 ○ 수량: 1량 (3) 허가기간 : 2024. 2. 29. ~ 2024. 3. 31. (4) 허가조건 ○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조건부 허가	'24.2.28
국가등록 문화재 전차 363호	서울시 종로구	국립 어린이 과학관장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국립어린이과학관장 (2) 허가내용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3 ○ 내용: 차체 내·외부의 변색 및 크랙 등 경미한 손상에 따른 재도장 ○ 수량: 1량 (3) 허가기간 : 2024. 3. 5. ~ 2024. 4. 30. (4) 허가조건 ○ 제출된 보존처리계획서에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5) 현지조사 주요의견 <문화재수리기술자 ○○○('24.2.29.) > ○ 클리닝 및 도장 제거 - 도장 제거 후 손상 부위에 대한 복원방안 수립 - 복원시 내부식성이 향상된 강판(용융아연	조건부 허가	'24.3.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도금강판)과 스틸 퍼티 사용 ○ 재도장 - 색상에 대한 기준(조색값)을 제시하고 정확한 도색 공정을 위한 도면 작성 - 재도장에 사용되는 재료인 프라이머, 페인트, 퍼티 등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